ISSN 2509-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통권 31호, 2024. Vol.9 No.2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Revised Direction of Public Design Administrative Rules

주 저 자 : 채완석 (Chai, Wan Seok) ㈜투엔티플러스 부대표, 홍익대 공공디자인전공 겸임교수
staff21_nave@hongik.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4.2.191

접수일 2024. 05. 14. / 심사완료일 2024. 06. 04. / 게재확정일 2024. 06. 12. / 게재일 2024. 03. 30.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necessity of revision is discussed every year because the public design administrative rules enac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Design Act are arbitrary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compare and review the application statu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tification, which is a public design administrative rules, with previous studies, and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revision by deriving the restriction factors of application. For the public design administrative rules and application status were used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institution, and the necessity of revision and constraints of applying standards were derived through user group interviews. As a result, the revision of the service cost calculation standar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amount of the compensation target busines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standard of the public design professional manpower were suggested as the revision direction.

Keyword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Administrative rules(관련 기준), Revision direction(개정 방향)

요약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 제정된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해마다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적용 현황을 선행 연구와 정량적으로 비교 · 검토하고, 적용의 제약 요인을 도출하여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과 적용 현황은 법제처와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은 사용자 그룹 인터뷰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은 준수율이 매우 낮고, 제안서 보상 기준은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전문인력 기준은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기준 재정립, 보상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 설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강화를 개정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검토

2-1. 기준의 위계
2-2. 용역 대가 산정 기준
2-3. 제안서 보상 기준
2-4. 전문인력 기준

3. 적용 현황 분석

3-1. 분석 개요
3-2. 분석 방법
3-3. 분석 결과
3-4. 소결

4. 개정 방향 설정

4-1.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재정립
4-2. 보상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 설정
4-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강화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 이후,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인 3건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2018년 1월 18일 제정되었다. 그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조례 등을 근거로 시행하던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공공디자인 적용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는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제정된 임의규정으로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은 독립적인 노임단가와 표준품셈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 빈도가 낮고,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예산상의 문제로 적용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은 자격 기준의 체계 부족으로 유관 규정을 관습적으로 적용하거나 규정을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발주 및 입찰기관 모두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적용을 꺼리고 있어 해마다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을 도출하고,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과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3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세부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1]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선행 연구[2]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검토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와 2023년 현황을 비교하여 적용 현황의 변화 추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발주 및 입찰기관으로 구분한 전문가 그룹의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기준 적용 실태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 등을 검토한 후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5.7.). https://www.law.go.kr

2)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공공디자인 업무 실행 지원방안 수립, 2022.

2.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검토

2-1. 기준의 위계

공공디자인 관련 국가 법령은 [그림 1]과 같이 공공디자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하위 단계에서 공공디자인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기관의 조직 또는 하급기관 구성자의 행위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3]을 말하며,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1] 법의 위계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2-2.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법 제11조 제3항[4]에 따라 마련된 기준으로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인건비는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계

3) 한국법제연구원. (2024.1.19.). https://elaw.klri.re.kr

4) 법 제11조 제1항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3항에서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 인건비 기준단가의 등급별 기준금액[5]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직접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학력 및 자격 기준과 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표 1]과 같다.

[표 1]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단가

등급	학력 및 자격 기준	기준단가
책임 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자 - 12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자 - 공공디자인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 공공디자인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 공공디자인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자 -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경력자	책임 연구원급
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연구원급
보조 디자이너급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 아닌 공공디자인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공공디자인 관련 대학원 · 대학 ·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미만 경력을 갖춘 사람	연구 보조원급

직접경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여비,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 · 3D 그래픽비, 영상 · 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 · 위탁비 · 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 · 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한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써 임원 · 서무 ·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책정한다.

5)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1개월 중 22일,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매년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책임연구원은 월 3,622,585원, 연구원은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은 월 1,856,832원, 보조원은 월 1,392,671원이 기준금액임.

창작료는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써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책정한다. 이상의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구분	적용 산식
직접인건비	• (투입 인원수 × 투입 개월 수) ×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단가 * 단,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 1.8~2.2배 적용
직접경비	• 실제 경비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창작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0%)

2-3. 제안서 보상 기준

제안서 보상 기준은 공공디자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기준으로 보상 대상 사업, 보상 대상자 선정, 보상 예산 및 기준, 보상 통지 등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기준, 보상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발주한 공공디자인 용역의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참가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100 이상이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상 예산은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5/100의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4. 전문인력 기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공공디자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기준으로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의 인력으로서 크게 학력 및 경력, 기술자격으로 구분되며, 학력 및 경력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 후 4

년, 대학·전문대학 비전공학과 졸업 후 4년, 대학원·대학·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2년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과 관련 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

구분			전문인력 기준	실무경력
자격증			• 관련분야 기사 이상	1년 이상
학력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전공자	• 관련학과 졸업자	2년 이상
		비전공자	• 비 관련학과 졸업자	4년 이상
	고등학교	전공자	• 관련학과 졸업자	4년 이상
		비전공자	• 고등학교 졸업자	5년 이상

3. 적용 현황 분석

3-1. 분석 개요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적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첫째, 선행 연구[6]인 2020년 나라장터 입찰공고 조사기준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2023년 데이터를 구축하고, 3건의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적용 현황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둘째,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사용자 그룹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관계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와 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준 적용 실태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 등을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분석한다.

셋째, 기준 적용 현황과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3-2. 분석 방법

3-2-1. 나라장터 입찰정보 분석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적용의 변화 추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기준연도인 2020년도와 2023년 조달청 나라장터[7] 입찰정보를 비교하였으며, 선행 연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디자인'을 검색어로 추출한 자료 중 수의계약, 배정예산 5천만 원 이하, 물품/ 민간/ 공사/ 이월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2-2. 사용자 그룹 인터뷰 분석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고, 학술적 담론이 누적되지 않아 실무 분야 전문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끌어내며, 전문가의 견해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해야 하는 여건에 따라 표적집단면접이 적합한 조사 방법으로 판단되어 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적용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실효성 부족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이외에 별도로 심층 인터뷰 문항을 두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표 4]와 같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발주기관과 입찰기관으로 구분·선정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의 필요성과 적용 실태 등은 5점 척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4] 표적집단면접 설계

구분	연번	학력	전공	경력	소속기관	비고
대상	1	박사	환경디자인	11년	지자체(광역)	발주기관
	2	박사	건축	15년	지자체(기초)	
	3	석사	공공디자인	13년	지자체(기초)	
	4	학사	경영	6년	공공기관	
	5	석사	건축	12년	전문회사	입찰기관
	6	석사	환경디자인	23년	전문회사	
	7	석사	공공디자인	21년	전문회사	
	8	석사	공공디자인	8년	관련 학회	
내용	•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적용 실태 •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개정 필요성 •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					

3-3. 분석 결과

3-3-1. 기준 적용 현황

6) 문화체육관광부, Op.cit., p.116.

7) 나라장터. (2024.5.7.). https://g2b.go.kr

나라장터 입찰정보 분석 결과 3건의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모두 적용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표 5]와 같이 2020년과 2023년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나라장터 입찰정보 비교

2020년(265건)			2023년(240건)		
용역 대가	제안서 보상	전문 인력	용역 대가	제안서 보상	전문 인력
17건	3건	41건	18건	3건	43건
6.4%	1.1%	15.5%	7.5%	1.3%	17.9%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은 2020년 대비 약 16.8%,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10.6%,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은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의 경우 보상 관련 규정을 제안요청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라는 설명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 적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2. 기준 적용 실태

사용자 그룹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적용 실태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표 6]과 같이 응답자 모두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준 적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제안서 보상 기준은 입찰 및 발주기관 모두 적용 여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 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6] 기준 적용 실태 인식 수준

항목	발주 기관	입찰 기관	평균
전반적으로 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는가?	2.25	1.75	2.00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2.50	1.25	1.88
제안서 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1.25	1.00	1.13
전문인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3.25	2.50	2.88

3-3-3. 기준 개정의 필요성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표 7]과 같이 응답자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건의 고시 중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발주기관, 입찰기관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기준의 개정 필요성보다 전반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 그룹인 발주 및 입찰기관 모두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기준 개정의 필요성 인식 수준

항목	발주 기관	입찰 기관	평균
전반적으로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가?	3.75	4.00	3.88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가?	3.50	4.50	4.00
제안서 보상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가?	2.25	3.75	3.00
전문인력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가?	3.25	4.25	3.75

3-3-4.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은 사업예산 편성단계에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노임단가가 학술용역 기준금액의 1.8배~2.2배로 규정되어 타 기준보다 유동적이라는 점과 표준품셈이 없어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대가 산정 기준의 하나인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 고시에서 책임디자이너급, 디자이너급, 보조디자이너급의 3단계로 분류하고 있어 등급에 따른 업무의 세분화에 취약하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입찰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표기되지 않아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공공시설물과 시각이미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등이 조합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창작료를 불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제안서 보상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은 현행 규정에서 보상 대상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제안서 보상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입찰기관은 보상에 따라 제안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지식재산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과 보상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전문인력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은 전문인력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실무경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발주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입찰 시 전문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간소화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 적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변하였다.

3-4. 소결

3건의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의 적용 현황과 사용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은 준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제안요청서 등에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대가를 정하도록 하거나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의 항목을 대가 기준으로 명시한 경우는 총 17건(6.42%)에 불과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같이 고시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을 준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문체부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는 편견과 디자인 행위에 대한 아이디어 비용을 불인정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제안서 보상 기준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요청서 등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안서 보상 규정을 명시한 경우는 총 3건(1.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의규정 특성상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다는 점과 정부 사업 중 제안서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다른 분야와 달리 보상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제안서 보상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아직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 항목 중 참여인력의 전문성 기준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으로 명시하거나 적용한 경우는 총 41건(15.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제 간 구분이 모호하여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이 같은 학력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실무경력 조건만 충족하면 학력 기준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평가하는 현행 규정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규정인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과 비교할 때 전문인력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실무경력을 포함한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4. 개정 방향 설정

4-1.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재정립

공공디자인 용역의 대가는 '학술연구용역 대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리를 추구하는 디자인 사업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체계라 할 수 있다.[8] 그럼에도 산정 기준은 [표 8]과 같이 영리 추구에 기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및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9]을 택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업무 절차를 구분한 후 투입인원을 설정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고, 직접경비와 제경비를 합산하여 대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표준품셈[10] 및 노임단가[11]가 전제되어야 한다.

8) 안진호 외 2, 디자인서비스의 대가기준 사례조사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63.

9)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임.(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참조)

10) 대표적·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것임.(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11) 직종별 근로자들의 실수령 임금 수준을 파악한 것으로, 월 인건비를 평균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임.(대한건설협회)

[표 8] 분야별 용역 대가 산정 기준

현행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엔지니어링	학술연구용역
근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정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단가산정방식
항목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인건비
	직접경비	직접경비	직접경비	경비
	제경비	간접경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창작료	창작료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비영리 제외

따라서 사업의 대상이 공공시설물과 시각이미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등 결과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공공디자인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품셈과 노임단가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직접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을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등급 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세분화가 요구된다. 이는 관련 분야인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과 비교할 때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므로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별표]와 고시 제4조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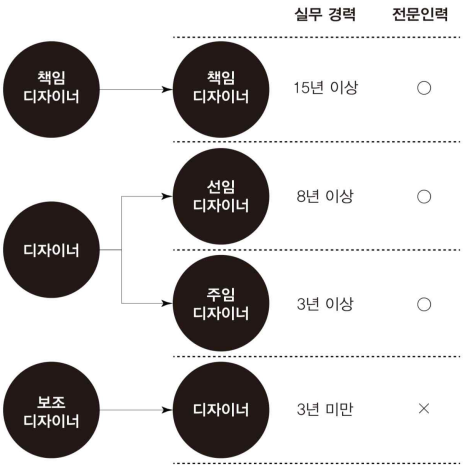

[그림 2]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개정(안)

4-2. 보상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 설정

정부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디자인을 포함하여 공사설계의 대형공사,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 총 5개 분야로 보상 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표 9]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9] 제안서 보상 사업비 기준 규모 비교

구분	보상 사업비 기준	보상 예산 기준
공공디자인 사업	기준 없음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5/100
공사설계	(대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이상 (기술제안입찰) 기준 없음	(대형공사)해당 공사 예산의 20/1000 (기술제안입찰) 해당 사업예산의 10/1000
소프트웨어 사업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최대 1억 원,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
건축 설계공모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최대 1억 원, 예정 설계비의 10%
건설기술 용역(pq)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기본설계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실시설계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	규정 없음

그러나 공공디자인 사업은 보상 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의 제안서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표 10]과 같이 공공디자인 보상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표 10]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조~제5조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1(보상 대상 사업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금액을 사업예산의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9조	〈현행과 같음〉

이와 별도로 현행 고시 제4조에서 사업비와 별도로 보상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통계목이 맞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공디자인 사업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 등에 보상 기준, 보상 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4-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강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 등 관련 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제외하면 학제 간 구분 없이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실무경력의 충족 여부에 따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최소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타 분야 전문인력의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문인력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깊은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표 11] 참조)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력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실무경력 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표 1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

구분		전문인력 기준	실무경력
자격증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자격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	2년 이상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소지자	3년 이상
학력	대학원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	-
		일반학부졸업자	1년 이상
	4년제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1년 이상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2년 이상
		일반학과 졸업자	4년 이상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2년 이상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3년 이상
		일반학과 졸업자	5년 이상
	고등학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동등이상 자격소지자	4년 이상
		일반미술학과 졸업자(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동등이상 자격소지자	5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이상 자격소지자	6년 이상
공모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 추천디자이너	-
		국내·외 전국 단위 산업디자인 관련 공모전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 수상한 자	1년 이상
		국내·외 전국 단위 산업디자인 관련 공모전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 건으로 입선 이상 수상한 자	2년 이상
경력		자격증, 학력, 공모전 기준 이외에 실무경험을 가진 경력자	10년 이상

따라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의 최소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 5년에서 6년으로 강화하고, 대학원, 4년제 및 2·3년제 대학, 고등학교 등 학제 간 구분과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실무경력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시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적용의 제약 요인을 도출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적용 현황 분석 단계에서 선행 연구인 2020년도 나라장터 입찰정보와 2023년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발주기관과 입찰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기준 적용 실태와 필요성, 제약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준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제안서 보상 기준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인 3건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는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는 산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행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은 영리를 추구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불합리한 구조로 '학술연구용역 대가'에 기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대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인 산업디자인 대가 기준 중 환경 또는 공간디자인 영역의 노임단가가 마련되어 않은 현시점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품셈과 노임단가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직접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실무 경력 연한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디자인 용역의 보상은 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대상 사업비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의 제안서를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공공디자인 보상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을 '사업예산의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사업비와 별도로 보상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 등에 보상 기준, 보상 통지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학제 간 구분 없이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실무경력 조건을 충족하면 동등하게 평가하는 구조로 최소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타 분야보다 완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의 최소 요건을 현행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 5년에서 6년으로 강화하고, 대학원, 4년제 및 2·3년제 대학, 고등학교 등 학제 간 구분을 통해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과 같이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제약 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과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다만 법의 체계를 다룬다는 점, 주제의 특성상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해 현장 실무자인 전문가 그룹의 견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후속 연구가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기웅, 제안서 보상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9.
2.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공공디자인 업무 실행 지원방안 수립, 2022.
3. 산업통상자원부 외 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활용가이드, 2021.
4. 김승기 외 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수요전망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디자인연구, 2021. 12., 제1권, 3호.
5. 안진호 외 2, '디자인서비스의 대가기준 사례조사 연구', 서비스연구, 2019, 9,, 제9권, 제3호.
6. 육근형 외 1, '공공디자인 사업의 발주절차 개선방안 기초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2, 제17권, 4호
7. 박정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설계대가기준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8. 지환수, '공공박물관의 전시디자인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모델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9. elaw.klri.re.kr
10. www.law.go.kr